

1. 개정이유

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「지역보건법」이 개정(법률 제19465호, 2023.6.13. 일부개정, 2023.12.1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,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감염병 대응을 도모하고자 관련 시설 및 장비 기준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의2)

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 구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, 협의회 규약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

나.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 정비(안 별표3)

감염병검사시설 및 관련 장비 기준, 감염병 확산 시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대면 회의 장비 기준을 신설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
3. 구성목적
4. 구성일자
5. 협의회의 규약 사본

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협의회의 명칭
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
3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
4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
5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

별표 3 I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I 제2호다목 중 “모형”을 “모형, 비대면 회의 장비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감염병검사시설: 검체 채취, 검체 보관 등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건축물 등의 시설(가설건축물도 이에 해당하며, 현재 가설건축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다른 장소에서 보관 중인 경우와 가설건축물의 보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을 갖춘 것으로 본다)

라. 감염병검사시설 : 검체 채취 장비, 검체 보관용 냉장고 등 감염병 검사에 필요한 장비

부 칙

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2(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구성·운영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u> <u>1. 협의회의 명칭</u> <u>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</u> <u>3. 구성목적</u> <u>4. 구성일자</u> <u>5. 협의회의 규약 사본</u> <u>②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협의회의 명칭</u> <u>2.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</u> <u>3.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</u> <u>4.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 방법</u> <u>5.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</u>

	<u>영에 필요한 사항</u> <u>③ 지역보건의료기관이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.</u>
--	--